

『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6년 2월 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17일

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으로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책임을 다하다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순직할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장대상자 (안 제3조)
 - 현직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
- 대상자 심의 (안 제4조)
 - 시장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시의회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여부 결정

- 장의 비용 (안 제10조)

- 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그 일부를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라. 참고사항

- 국장 및 국민장에 대한 법률
-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
-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
- 서귀포시 시민장·시장에 관한 조례
- 김천시민장·시장에 관한 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제정조례안은 현직 구미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예방 등으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고 시 사망할 경우 시장(市葬)으로 거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.
- 주요내용은 시장대상자 적용범위 , 장의심의위원회 구성, 영결식 및 운구방법, 장의비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조례안 재검토사항은 안 제5조 「장의심의위원회」 및 안 제6조 「장의위원회」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인원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인 조례에 위원회 구성인원 명시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